

CSE 사례 번호:

양육 당사자:

비양육 부모:

법원 사건 번호:

친애하는 :

귀하의 요청에 따라 신용 보고 조사가 시작/진행되었습니다 . 연체된 모든 양육비 계좌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 (Title 45 CFR 302.70 (a)(7))에서,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육비 계좌에 대해서는(가정법 4701 (d)(1))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용 보고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귀하의 계정이 신용 조회 기관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아래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 내에 정보가 접수되지 않으면 분쟁이 종료되며 신용 정보 기관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 이전에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된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귀하의 계정에 변경이 없었거나 신용 보고 기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신용 보고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행정 검토에 대한 권리

귀하는 연체된 지원금에 대한 신용 보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 또는 연체된 양육비 금액과 관련하여 행정 심사를 요청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관리하는 지역 아동양육기관(LCSA)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LCSA에서 귀하의 사건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Customer Connect을 방문하셔서 www.childsupport.ca.gov/customer-connect에서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으시거나 (866) 901-3212로 전화하세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은, TTY 번호 (866) 399-409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